

##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16일

### 서 대 문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 : 윤\*한 외 30명
3. 공고기간 : 2025. 1. 16. ~ 2. 6.
4.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5. 공고내용
  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1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(안전교육의 대상 등)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.
  2.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44조(과태료)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<안전교육 개요>

- 대 상 자 :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(3년마다 1회)
- 이수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- 교육방법 : 오프라인, 온라인 교육 중 택1 / 4시간 진행
- 교육내용 :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해,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
- 교육신청 :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([www.ceoedu.kr](http://www.ceoedu.kr)) 통해 신청
- ※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으나,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그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

※ 안전교육 신청 및 일정 등 문의 : 안전교육 기관([www.ceoedu.kr](http://www.ceoedu.kr))

※ 면허 관련 문의 :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(☎02-330-1148)